

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제공일자 2010. 9. 29.

총 1면

www.nec.go.kr

82-2-503-0648

FAX 82-2-504-5350

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“트위터(twitter)”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

- ◎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내용을 “트위터(twitter)”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.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“선거운동정보”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(follower)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·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·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·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 “트위터(twitter)”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‘친구맺기’ 기능,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시스템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컴퓨터·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SNS(Social Network Service)입니다.

※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

할 수 있는 선거운동	할 수 없는 선거운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▶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누구든지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

<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>

재외선거 홈페이지(ok.nec.go.kr)가 오픈되었습니다.